

##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대상자에 한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선정에 있어 착오로 재차 선정된 사항으로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해 양 수 산 연 구 원 장

1. 제 목 :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2. ~ 2019. 4. 16.(14일간)
3. 대 상 자
  - 선정년도 : 2018년
  - 주소 : 제주시 일주동로 80, 가동 705호
  - 성명 : 김\*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시를 감춤
4. 처분사유 : 2017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 재차 선정
5. 처분내용 :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
6. 처분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후계농어업인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및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육자) 시행지침
7. 행정처분 : 2019.03.08.
8.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